

의안번호	제 2020 - 14호
보 고 연 월 일	2020. 4. 20. (제10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제133차 전체회의 1
 - 1. 일시·장소 1
 - 2. 참석자(전문위원 12명) 1
 - 3. 주요 안건 1
- II.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추가 검토 · 2
 - 1. 회신 요지 2
 - 2. 논의 결과 2
- II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대유형 순서 · 3
 - 1. 경과 및 검토 배경 3
 - 2. 각 대유형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3
 - 3. 논의 결과 4
- IV.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 · 4
 - 1. 경과 및 검토 배경 4
 - 2. 검토 결과 7
 - 가.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의 범죄군 명칭 7
 - 나.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범죄군 명칭 9
- V.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형량범위 10
 - 1. 개관 10
 - 2. 제작 등 범죄 12
 - 3.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범죄 20
 - 4. 배포 등 범죄 28
 - 5. 소지 범죄 34
- V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40
 - 1.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결과 40
 - 가. 요약 40

나.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41
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48
2.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57
VII. 향후 일정	59

【별첨】

- 백광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
- 김춘수·유관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검토 -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I. 제133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20. 4. 6.(월) 15:00 ~ 19: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전문위원 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춘수, 김희연, 박성훈, 백광균, 범현, 유관모, 이형일,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김혜경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추가 검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 내지 3, 5항에 규정된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이하 통칭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3개 범죄’)를 통합한 양형기준의 대유형 순서와 범죄군 명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II.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추가 검토

1. 회신 요지

‘양형인자의 정의’에서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를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이중 ‘위험한 부위’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예시나 부연 설명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 (한국여성변호사회)

2.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현재의 수정안이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위험한 부위’는 생명, 신체 기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심장, 폐, 간 등 신체 주요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예측 가능
 - 주요기관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오히려 일부만 예시로 들면 자칫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 현재 정의규정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연히 대응할 수 있음
- 다른 범죄와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함
 - 성범죄, 강도, 폭력, 방화, 과실치사상 범죄에서 동일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살인,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범죄에서도 치료기간 예시만을 제외하고 동일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교통범죄에서만 굳이 다르게 정의할 만한 이유가 없음

Ⅲ.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대유형 순서

1. 경과 및 검토 배경

- 제100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①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와 ② 제97차 및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가 완료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통합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함
-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대유형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됨

2. 각 대유형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적용법조		대유형	구성요건	법정형
§ 14	①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5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②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 전시, 상영/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5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③		영리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14 ②항 죄	7년↓ 징역
§ 13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목적으로 통신매체 통하여 음란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2년↓ 징역, 500만 원↓ 벌금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적용법조	대유형	구성요건	법정형
§1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무기징역, 5년↑ 징역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소지, 운반/공연히 전시, 상영	10년↓ 징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공연히 전시, 상영	7년↓ 징역, 5,000만 원↓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1년↓ 징역, 2,000만 원↓ 벌금

3. 논의 결과 ⇨ 의견 일치(대유형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대유형 2 ‘카메라등이용촬영’, 대유형 3 ‘통신매체이용음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작 등 범죄), 제2항(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범죄), 제3항(배포 등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움
-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임. 범죄군을 대표하는 상징적 범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라고 볼 수 있음

IV.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

1. 경과 및 검토 배경

- 전문위원단에서는 제127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2019. 10. 25. 열린 양형위원회 제97차 정기회의에서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가 보고됨. 당시 보고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디지털 성범죄」라는 명칭의 적정성 여부

① 다수 의견(10인) : 적절하지 않음

- 설정 대상 범죄의 범위, 디지털 기기가 아닌 범행 수단의 존재 가능성, 디지털 성범죄 개념 정립에 혼동을 줄 우려 등 고려

② 소수 의견(1인) : 적절함

- 디지털 성범죄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 대부분 범행 수단이 디지털 기기인 점 등 고려

2. 제1 쟁점에 관한 다수 의견이 제안한 범죄군 명칭

① 다수 의견(8인) : 「카메라·통신매체 등 이용 성범죄」

- 카메라와 통신매체라는 대표적 행위 매개 수단을 열거하고 상위 포섭 범죄(성범죄)를 언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② 소수 의견(2인) : 「카메라 등 매체 이용 성범죄」

- 향후 다른 범죄수단을 이용한 범죄의 포섭 가능성 고려

○ 제97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범죄군 명칭으로서 「디지털 성범죄」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음. 그러나 「성범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위원단에 추가 검토 요청

○ 전문위원단에서는 제129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에 「성범죄」라는 명칭을 쓸 것인지, 「성폭력범죄」라는 명칭을 쓸 것인지를 검토하였고, 2019. 12. 9. 열린 제98차 양형위원회 회

의에서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가 보고됨. 당시 보고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다수 의견(9인) : 「성범죄」 명칭 사용이 적절함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범죄」에 포섭하여 「성폭력범죄」와 구별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형기준에서 「성폭력범죄」로 분류할 경우 개념상 혼동이 생길 수 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행사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고, 그 행위태양이 통상적인 폭력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폭력’이라는 명칭이 부적절
- 향후 동종 또는 유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추가 설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외연이 더 넓은 ‘성범죄’라는 표현이 적함

2. 소수 의견(3인) : 「성폭력범죄」 명칭 사용이 적절함

- 최근 디지털 기술이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문제되고 있는 촬영이나 유포, 판매목적의 유통·판매 등에 있어서 디지털 범죄가 갖고 있는 폭력적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범죄군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디지털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폭력 범죄로 정의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력성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젠더 감수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법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님

-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 제100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3개 범죄를 하

나의 범죄군으로 취급하기로 의결

-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이 문제됨

2. 검토 결과¹⁾

가.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의 범죄군 명칭

(1) 논의 배경

- 원래 전문위원단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죄만이 양형기준 설정 대상임을 전제로 범죄군 명칭을 검토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가 추가되고 3개 범죄가 하나의 범죄군으로 통합되면서 범죄군 명칭 논의의 전제 사항이 달라짐
-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행정부나 수사기관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기구 또는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 공식 용어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남
- 전문위원단은 변화된 사정들을 감안하여, ① 「디지털」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②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범죄군 명칭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함

1) 범죄군 명칭을 논의할 때에는 범헌 전문위원이 아직 출석하지 않아 11명의 전문위원이 논의를 진행함. 따라서 6인 이상일 경우 다수 의견에 해당함.

(2) 논의 결과

(가) 다수 의견(6인): 「디지털 성범죄」가 적절

- 비록 '디지털 성범죄'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다른 국가기관과 언론,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념 혼란의 여지가 크지 않고, '보전', '게임물' 등과 같이 종전에도 비법률용어를 범죄군 명칭에 사용한 사례가 존재함
- 국민적 관심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상징성이 있고, 향후 '디지털'을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범죄 등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음
- 범행 수단으로 대부분 디지털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디지털 방식의 사용으로 인한 반복 재생, 광범위한 배포 등이 주된 사회적 문제가 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제시된 논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라는 명칭이 적합함

(나) 제1 소수 의견(2인): 「디지털 성폭력범죄」가 적절

- 다수 의견과 같은 논거로 '디지털'이라는 용어 사용에 찬성
- 기존 제시된 논거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실질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폭력범죄」라는 명칭이 적합함

(다) 제2 소수 의견(3인):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부적절

- 디지털 기기가 아닌 범행수단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포섭할 수 있는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자칫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한 범죄는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음
- ‘디지털 성범죄’는 법률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으로 공식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디지털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폭력범죄’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양형기준을 주로 참조하는 법관은 물론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범죄가 이에 해당되는지 인식하기 어려움

나.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범죄군 명칭

(1) 다수 의견(9인): 「아동·청소년음란물·신체촬영·통신매체음란범죄」

- 범죄별 주된 속성을 일목요연하게 집약, 연결하여, 양형기준을 참조할 국민과 법관이 어느 범죄가 이 범죄군에 해당하는지를 범죄군 명칭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음
- 종전 양형기준에서도 다소 긴 범죄군 명칭이 사용된 사례(「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범위반범죄」)가 있고, 범죄군 명칭 전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적절한 약어(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음란물등범죄’)를 사용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

(2) 제1 소수 의견(1인): 「아동·청소년·통신매체·카메라 등 이용 성범죄」

- 다수 의견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성범죄’라는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

(3) 제2 소수 의견(1인): 「불법촬영 등 범죄」

- 이 범죄군의 대표적인 속성은 ‘불법촬영’에 있으므로, ‘불법촬영’을 범죄군 명칭에 전면적으로 드러냄이 타당
- 다수 의견이나 제1 소수 의견이 제시한 명칭은 지나치게 길어 범죄군 명칭을 언급할 때 불편함이 예상됨

V.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형량범위

1. 개관

가. 법률 규정 및 설정 범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11	①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무기징역, 5년↑ 징역
	②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소지, 운반/공연히 전시, 상영	10년↓ 징역
	③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공연히 전시, 상영	7년↓ 징역, 5,000만 원↓ 벌금
	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1년↓ 징역, 2,000만 원↓ 벌금

나. 의결된 유형 분류 방식

- 제100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소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기로 의결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3	배포 등			
4	소지			

다. 고려 사항

- 일반적 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해당 범죄군의 특수한 사항

-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 배포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다소 낮으나, 그 죄질에 대해서는 제작 등과 유사하게 보아야 한다는 지적 있음
- 주로 구약식으로 처리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소지 범죄에 대해서 제작 등의 공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그 죄책을 무겁게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2. 제작 등 범죄

가.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성범죄군 형량 범위

(1) 현황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 4, 5항(무기 / 5년 ↑)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청소년 강간·준강간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 3항(무기 / 5년 ↑)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 4, 5항(5년 ↑)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청소년 유사강간·유사준강간 / 청소년 위계·위력 유사성 교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라)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 5항(5년 ↑)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유사강간 / 위계·위력 간음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마)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 4항(5년 ↑ / 3~5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바)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5년 ↑)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2) 분석

감경	기본	가중
2년6월~5년 (3) 3년~5년6월 (3)	3년6월~7년 (1) 4년~7년 (2) 5년~8년 (3)	5년~8년 (1) 6년~9년 (5)

나. 선고 형량

(1) 양형자료조사 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인원	3	12	15
	%	20.0	80.0	100.0

실형		형량(월)				전체
		5	6	30	36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인원	-	-	13	2	15
	%	-	-	86.7	1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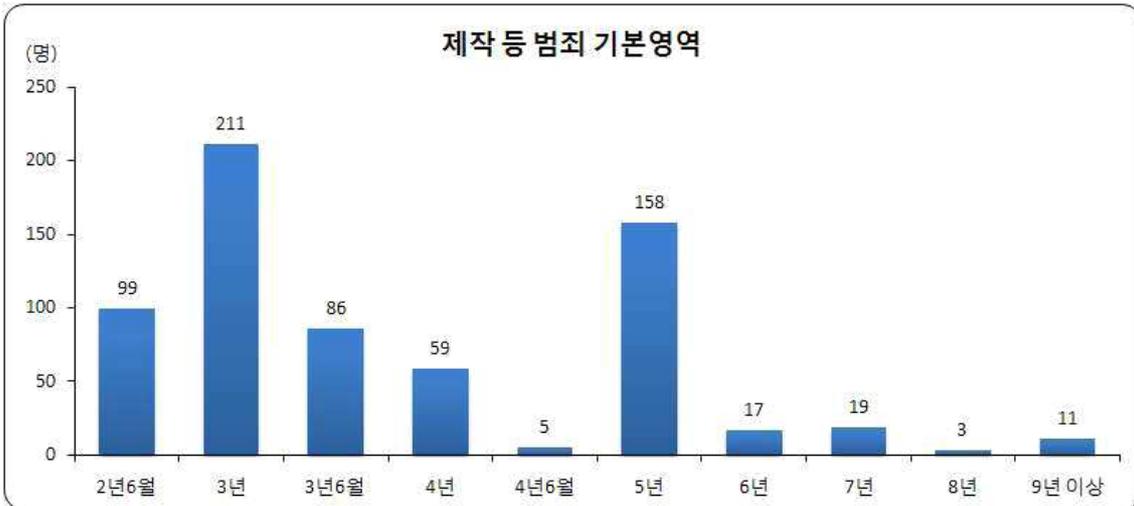
집행유예		형량(월)								전체
		1	4	6	8	10	12	30	36	
청소년성보호 법 제11조 제1항	인원	-	-	-	-	-	-	10	2	12
	%	-	-	-	-	-	-	83.3	16.7	100.0

(2)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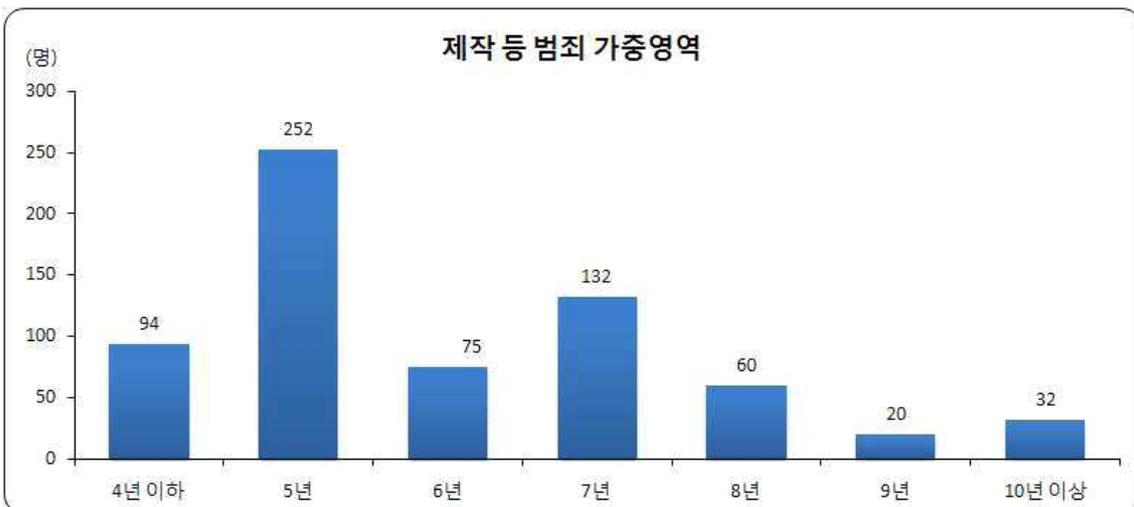
- 평균형량 = 30.4월
- 법정형 하한 징역 5년 → 작량감경한 징역 2년6월(30월)에 집중
 - 처벌불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 부분 고려함.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 범 죄의 양형분포만으로는 기본 영역이나 가중 영역의 형량범위 까지 가늠하기는 어려움

다. 법관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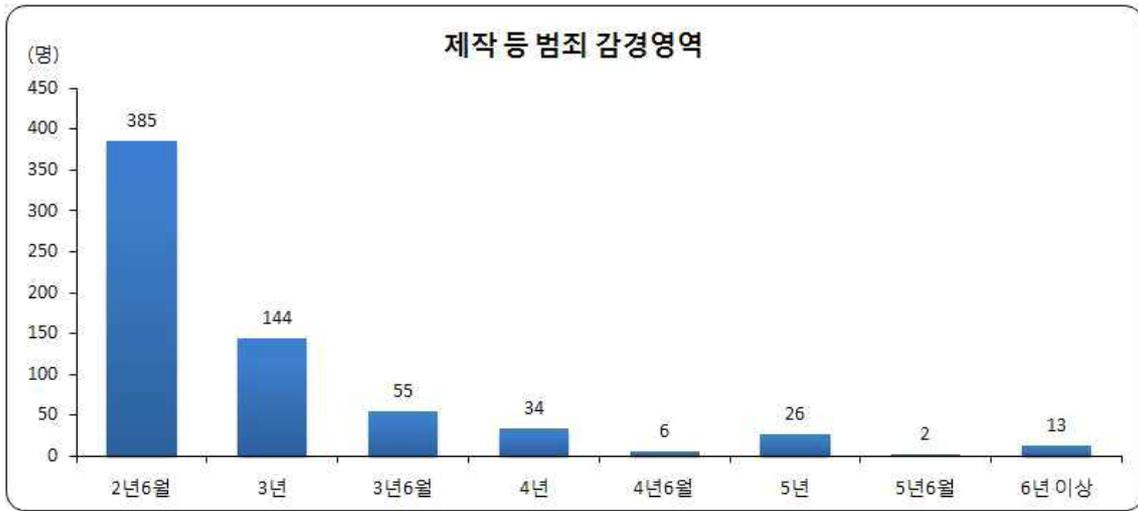
(1) 기본 영역



(2) 가중 영역



(3) 감경 영역



(4) 분석

감경 영역	인원	%
2년6월	385	57.9
3년	144	21.7
3년6월	55	8.3
4년	34	5.1
4년6월	6	0.9
5년	26	3.9
5년6월	2	0.3
6년 이상	13	2.0
전체	665	100

기본 영역	인원	%
2년6월	99	14.8
3년	211	31.6
3년6월	86	12.9
4년	59	8.8
4년6월	5	0.7
5년	158	23.7
6년	17	2.5
7년	19	2.8
8년	3	0.4
9년 이상	11	1.6
전체	668	100

가중 영역	인원	%
4년 이하	94	14.1
5년	252	37.9
6년	75	11.3
7년	132	19.8
8년	60	9.0
9년	20	3.0
10년 이상	32	4.8
전체	665	100

라. 논의 결과

(1) 요약

-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감경 영역 : 징역 2년 6월~6년
 - 가중 영역의 상한 : 징역 13년
-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
 - ㉠ 다수 의견(8인) : 징역 4년~8년
 - ㉡ 제1 소수 의견(3인) : 징역 5년~9년
 - ㉢ 제2 소수 의견(1인) 징역 3년~7년
 - 가중 영역의 하한
 - ㉣ 제1 의견(6인) : 징역 6년
 - ㉤ 제2 의견(6인) : 징역 7년

(2) 상세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감경 영역 : 징역 2년 6월~6년
 - 제작 등 범죄의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감경인자를 갖춘 감경 영역의 경우 하한이 법정형 하한(징역 2년 6월)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 감경 영역의 상한은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과의 관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감경 영역 상한과의 균형, 규범적 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 6년으로 함이 적절

○ **가중 영역의 상한 : 징역 13년**

-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인 점,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특별조정을 하면 가중 영역 상한의 1/2이 가중되는 점, 경합범일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이 가중되는 점 등을 참작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

㉠ **다수 의견(8인) : 징역 4년~8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징역 5년~8년)을 참조하되, 강간 범죄보다 다양한 행위 태양이 예상되는 점, 일반적으로 강간 범죄의 죄책이 음란물제작보다는 더 무겁다고 인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하한은 징역 4년으로 정함이 타당
- 기본 영역의 하한을 4년으로 설정함으로써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권고하지 않아 엄정한 양형 기대됨
- 종전 양형실무의 평균 선고형량(징역 30.4월)보다 크게 높아졌고, 법관을 대상으로 한 기본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의 39.1%만을 반영[징역 4년 미만 의견은 59.3%이고, 징역 8년 초과 의견은 1.6%]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규범적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짐

㉡ **제1 소수 의견(3인) : 징역 5년~9년**

- 기본 영역의 하한은 법정형 하한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징역 5년이 타당함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도 기본 영역 하한이 5년인 경우가 존재함. 특히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의 기본 영역 하한이 5년인데,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의 비교하여 음란물제작의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㉔ 제2 소수 의견(1인) : 징역 3년~7년

- 법관을 대상으로 한 기본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의 83.1%를 포함할 뿐 아니라 최다 응답 선택지인 징역 3년이 포함되어 양형실무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음
- 구성요건상 제작뿐 아니라 수입과 수출 등이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본 영역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중 영역의 하한

㉕ 제1 의견(6인) : 징역 6년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의 양형기준과의 균형상 징역 6년이 적정함. 특히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의 가중 영역(징역 6년~9년)보다 하한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법정형이 같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년~10년'인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함
-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기 위하여 기존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가중 영역의 상한을 높이는 것은 몰라도 하한까지 높이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함

㉖ 제2 의견(6인) : 징역 7년

- 감경 영역의 상한(징역 6년)과 가중 영역의 하한이 일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역 7년이 바람직함
- 엄정한 양형을 권고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가중 영역의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함께 높일 필요가 있음

(3)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징역 2년 6월~6년 (의견 일치)	징역 4년~8년(8인) 징역 5년~9년(3인) 징역3년~7년(1인)	징역 6년~13년(6인) 징역 7년~13년(6인)

3.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범죄

가.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성범죄군 형량 범위

(1) 현황

(가) 형법 제298조(10년 ↓ / 1,500만 원 ↓)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1년	6월~2년	1년6월~3년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1년 ↑ 10년 ↓ / 2~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0년 ↓ / 1억 원 ↓)

-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1년	8월~2년	1년6월~3년

(2) 분석

감경	기본	가중
~1년 (1)	6월~2년 (1)	1년6월~3년 (2)
4월~1년 (1)	8월~2년 (1)	2년~5년 (1)
6월~1년6월 (1)	10월~2년6월 (1)	

나. 선고 형량

(1) 양형자료조사 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인원	3	28	31
	%	9.7	90.3	100.0

실형		형량(월)				전체
		5	6	30	36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인원	1	1	-	1	3
	%	33.3	33.3	-	3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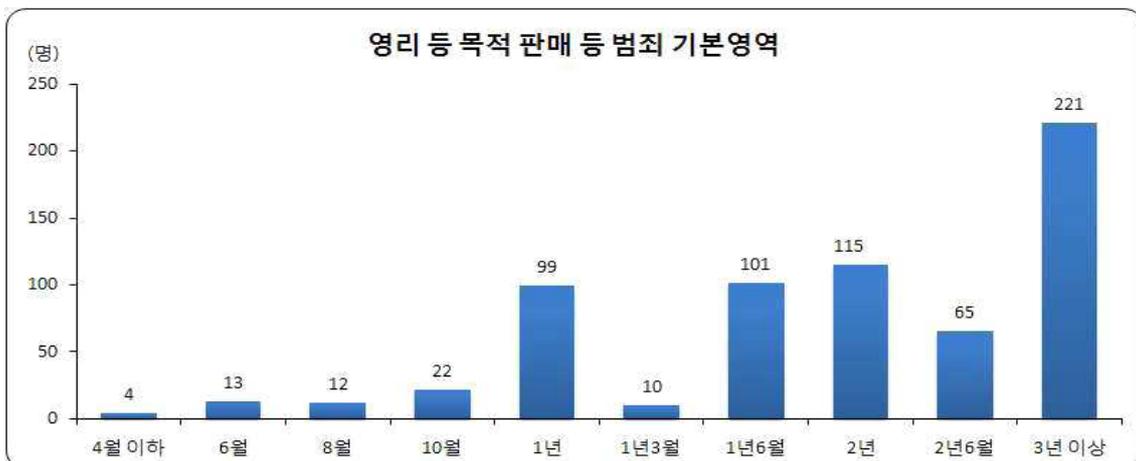
집행유예		형량(월)								전체
		1	4	5	6	8	12	30	36	
청소년성보호 법 제11조 제2항	인원	1	4	-	19	3	1	-	-	28
	%	3.6	14.3	-	67.9	10.7	3.6	-	-	100.0

(2)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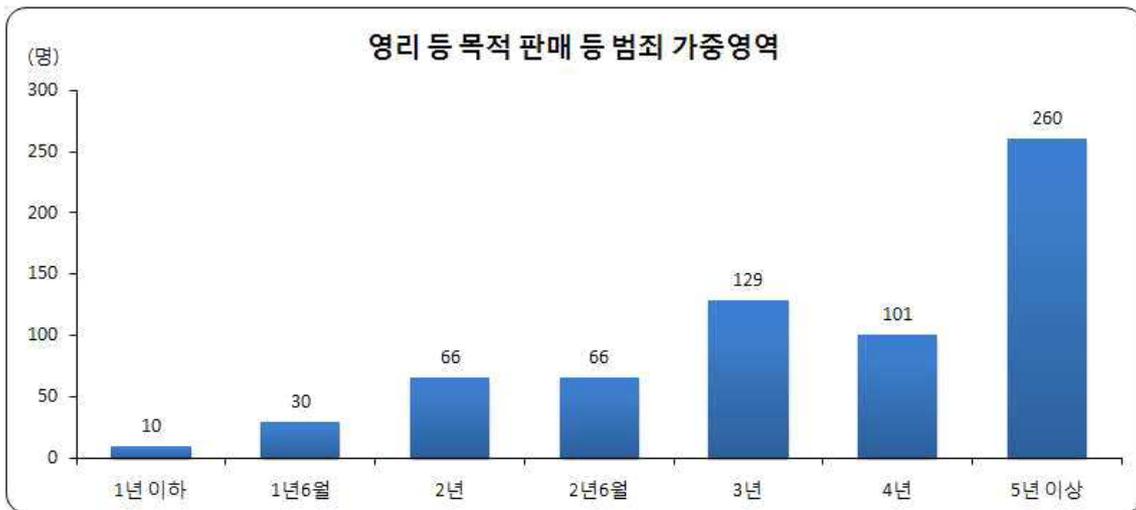
- 평균형량 = 6.9월
- 최고 형량 = 징역 36월(1건)
 -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여, 16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면서 인터넷 실시간 노출방송을 제안. 1달간 불특정 다수 시청자 상대로 가슴 등 신체부위 노출, 성적흥미를 유발하는 동작 반복 → 실시간 방송
 -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방송장비를 구비해 놓고 피해자에게 방송내용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위 범행은 단순히 음란물을 상영한 것을 넘어 제작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 실질적으로 제1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최저 형량 = 징역 1월(1건)
 - 피고인이 성인전화방 관리자로서 운영자와 공모하여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 방조범으로 볼 만한 사정도 있었던 사안으로 그 형량인 징역 1월(법정형 하한)은 실무상 혼하지 않음

다. 법관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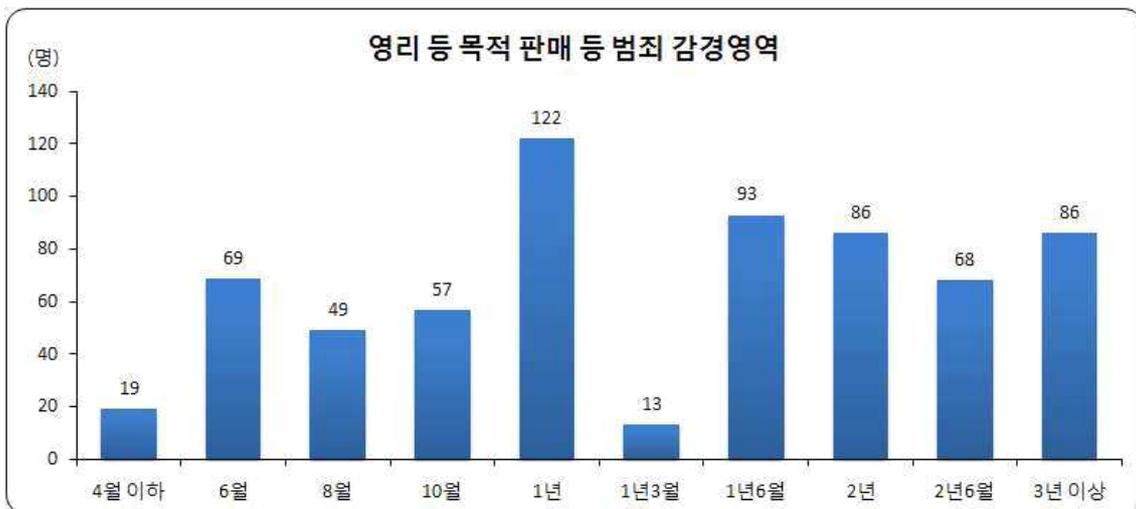
(1) 기본 영역



(2) 가중 영역



(3) 감경 영역



(4) 분석

감경 영역	인원	%	기본 영역	인원	%	가중 영역	인원	%
4월 이하	19	2.9	4월 이하	4	0.6	1년 이하	10	1.5
6월	69	10.4	6월	13	2.0	1년6월	30	4.5
8월	49	7.4	8월	12	1.8	2년	66	10.0
10월	57	8.6	10월	22	3.3	2년6월	66	10.0
1년	122	18.4	1년	99	15.0	3년	129	19.5
1년3월	13	2.0	1년3월	10	1.5	4년	101	15.3
1년6월	93	14.0	1년6월	101	15.3	5년 이상	260	39.3
2년	86	13.0	2년	115	17.4	전체	662	100
2년6월	68	10.3	2년6월	65	9.8			
3년 이상	86	13.0	3년 이상	221	33.4			
전체	662	100	전체	662	100			

라. 논의 결과

(1) 요약

-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감경 영역 하한 : 징역 8월
-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
 - ㉠ 제1 의견(6인) : 징역 2년~5년
 - ㉡ 제2 의견(3인) : 징역 1년 6월~4년
 - ㉢ 제3 의견(3인) 징역 1년 2월~4년
 - 감경 영역의 상한
 - ㉠ 다수 의견(7인) : 징역 2년 6월
 - ㉡ 소수 의견(5인) : 징역 3년
 - 가중 영역의 하한
 - ㉠ 제1 의견(5인) : 징역 3년
 - ㉡ 제2 의견(4인) : 징역 4년

- ㉔ 제3 의견(3인) : 징역 2년 6월
- 가중 영역의 상한
- ㉕ 다수 의견(8인) : 징역 7년
- ㉖ 소수 의견(4인) : 징역 8년

(2) 상세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감경 영역의 하한 : 징역 8월
 - 구성요건상 행위태양이 다양한 점,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 감경 영역 하한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다만 음란물 판매 등 범죄의 양형의 적정성에 관한 최근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여 징역 8월이 적정함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
 - ㉗ 제1 의견(6인) : 징역 2년~5년
 - 영리 목적 판매 등이 제작, 수입, 수출 범죄의 원동력이자, 공범관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과거 사례 등에 구애받지 말고 엄단할 필요성이 큼
 - ㉘ 제2 의견(3인) : 징역 1년 6월~4년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 양형기준 기본 영역 하한이 각각 6월, 8월, 10월인데 그 두 배 또는 세 배가 넘는 징역 2년을 하한으로 정하는 것은 규범적 조정의 정도가 지나침
 - 제1 의견에 의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매

수 범죄의 가중 영역과 이 범죄의 기본 영역이 동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징역 1년 6월~4년은 법관을 대상으로 한 기본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의 75.8%를 반영한 것으로서 장차 양형실무와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㉔ 제3 의견(3인) : 징역 1년 2월~4년

- 기본 영역 하한을 징역 1년 2월로 정하더라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 양형기준 기본 영역의 하한(징역 6월, 8월, 10월)보다 더 무겁게 설정하는 것임. 양형자료조사 결과 평균 형량이 징역 6.9월에 불과한 점까지 감안하면, 하한을 징역 1년 2월로 정하여야 규범적 조정의 정도가 적절하게 됨
- 법관을 대상으로 한 기본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에서 징역 1년 3월과 1년 6월이 16.7%에 이르므로 이를 기본 영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경 영역의 상한**

㉕ 다수 의견(7인) : 징역 2년 6월

-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에서도 감경 영역의 상한이 징역 1년 6월임. 그 두 배인 징역 3년을 감경 영역의 상한으로 정하는 것은 규범적 조정의 정도가 지나침
- 감경 영역 상한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더라도, 종전 양형실무와 비교할 때 엄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함

㉖ 제2 의견(5인) : 징역 3년

- 법관을 대상으로 한 기본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에서 징역 3년이 13%에 이르므로, 징역 3년을 감경 영역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한을 징역 2년 6월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

○ 가중 영역의 하한

㉠ 제1 의견(5인) : 징역 3년

-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도 가중 영역의 하한이 징역 2년인데, 그 두 배인 징역 4년을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규범적 조정의 정도가 지나침
- 범죄의 특성상 특별가중인자가 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실상 가중 영역이 기본 영역화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가중 영역에서 일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 4년을 하한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제2 의견(4인) : 징역 4년

- 영리 목적 판매 등이 제작, 수입, 수출 범죄의 원동력이자, 공범관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범죄를 엄단할 필요 있음
-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하여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 있음

㉢ 제3 의견(3인) : 징역 2년 6월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의 가중 영역 하한은 징역 1년 6월 또는 2년임. 제1 의견(징역 3년) 또는 제2 의견(징역 4년)은 지나치게 가중 영역의 하한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 법관을 대상으로 한 가중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에서 징역 3년 미만이 26%에 이르므로 가중 영역의 형량범위를 정하면서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 가중 영역의 상한

㉣ 다수 의견(8인) : 징역 7년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 양형기준의 가중 영

역 상한이 징역 3년 또는 5년임.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8년으로 설정하게 되면 규범적 조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됨

㉠ 소수 의견(4인) : 징역 8년

- 다양한 행위 태양이 존재하므로 가중 영역 하한을 징역 4년으로 정할 경우 상한은 징역 8년 정도가 적절함

(3)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징역 8월~2년6월 (7인) 징역 8월~3년 (5인)	징역 2년~5년(6인) 징역 1년6월~4년(3인) 징역 1년2월~4년(3인)	징역 2년6월 또는 3년~7년(8인) 징역 4년~8년(4인)

4. 배포 등 범죄

가.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성범죄군 형량 범위

(1) 현황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 3항(5년 ↓ / 3천만 원 ↓ // 영리 7년 ↓)

○ 카메라 등 이용촬영²⁾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³⁾
2	배포 등	4~10월	8월~2년	1년~3년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7년 ↓ / 5

2) 양형위원회 제97차 정기회의 심의 결과임.

3) 영리 목적 배포 등 범죄(7년↓)는 ‘영리목적’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가중 영역이 기본 영역에 해당함.

천만 원 ↓)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7년 ↓ / 7천만 원 ↓)

-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8월	6월~1년4월	1년~3년

(2) 분석

감경	기본	가중
~8월 (1)	6월~1년4월 (1)	1년~3년 (3)
~10월 (1)	8월~1년6월 (1)	
4월~10월 (1)	8월~2년 (1)	

나. 선고 형량

(1) 양형자료조사 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인원	0	4	4
	%	0	100.0	100.0

집행유예		형량(월)								전체
		1	4	5	6	8	12	30	36	
청소년성보호 법 제11조 제2항	인원	-	1	-	1	1	1	-	-	4
	%	-	25.0	-	25.0	25.0	25.0	-	-	100.0

(2)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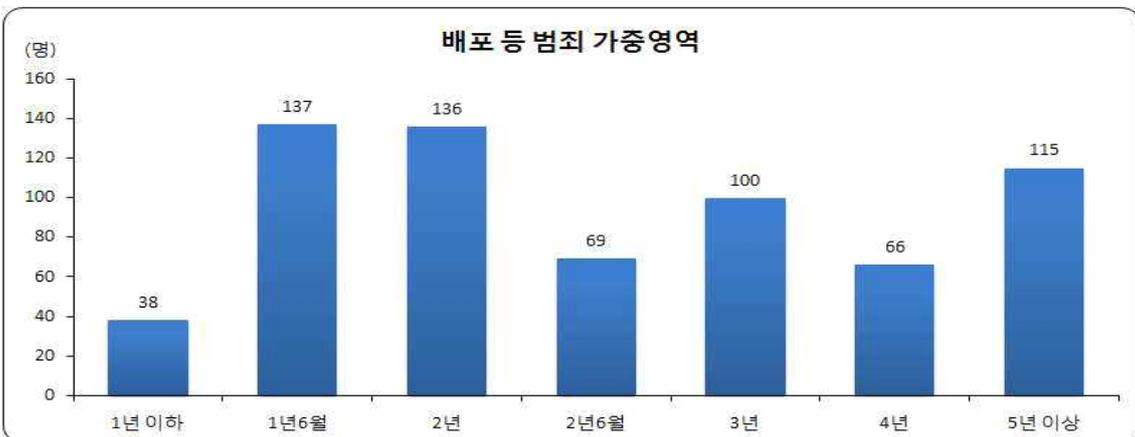
- 평균형량 = 7.5월
- 표본 부족으로 법정형 높은 제2유형보다 선고 형량 평균이 높음

다. 법관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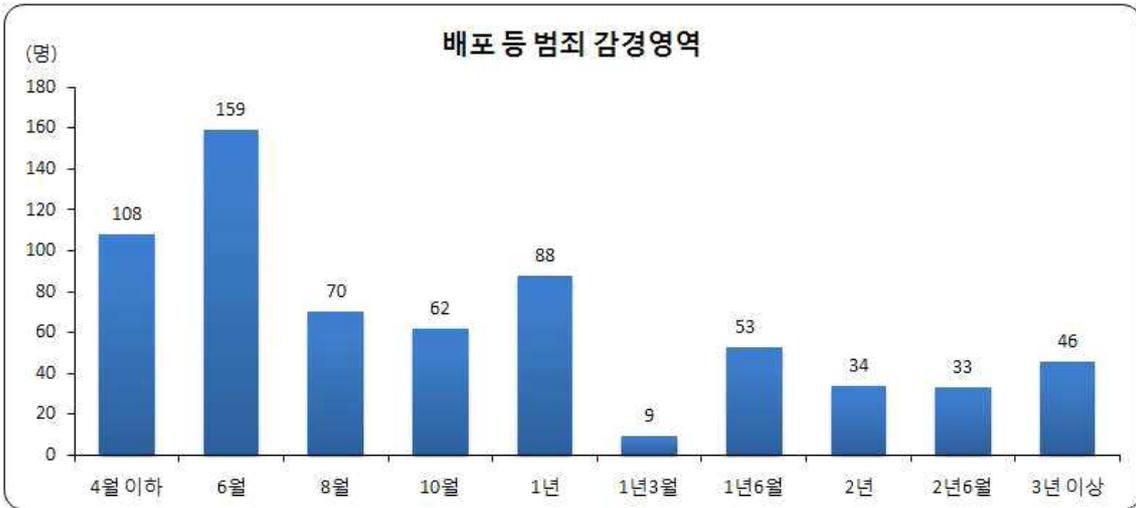
(1) 기본 영역



(2) 가중 영역



(3) 감경 영역



(4) 분석

감경 영역	인원	%	기본 영역	인원	%	가중 영역	인원	%
4월 이하	108	16.3	4월 이하	25	3.8	1년 이하	38	5.7
6월	159	24.0	6월	84	12.7	1년6월	137	20.7
8월	70	10.6	8월	78	11.8	2년	136	20.6
10월	62	9.4	10월	67	10.1	2년6월	69	10.4
1년	88	13.3	1년	132	20.0	3년	100	15.1
1년3월	9	1.4	1년3월	8	1.2	4년	66	10.0
1년6월	53	8.0	1년6월	77	11.6	5년 이상	115	17.4
2년	34	5.1	2년	78	11.8	전체	661	100
2년6월	33	5.0	2년6월	37	5.6			
3년 이상	46	6.9	3년 이상	75	11.3			
전체	662	100	전체	661	100			

라. 논의 결과

(1) 요약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감경 영역 : 징역 6월~2년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

㉠ 다수 의견(7인) : 징역 1년~3년

㉡ 소수 의견(5인) : 징역 1년 6월~4년

- 가중 영역

㉠ 다수 의견(7인) : 징역 2년~4년

㉡ 소수 의견(5인) : 징역 3년~7년

(2) 상세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감경 영역 : 징역 6월~2년

- 법관을 대상으로 한 감경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4%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포함하되, 소지 범죄와 권고 형량 범위를 구별하고 규범적 조정을 가하기 위하여 징역 4월(16.3%)은 배제함이 타당함
- 감경 영역의 상한은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과의 관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감경 영역 상한과의 균형,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 2년으로 함이 적절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

㉠ 다수 의견(7인) : 징역 1년~3년

- 제97차 양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중 반포 등 범죄의 가중 영역(징역 1년~3년)은 '영리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상한이 징역 7년으로 음란물 배포 등 범죄와 동일함. 하나의 범죄군에서 권고 형량범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이미 기존 양형실무에 대한 규범적 조정이 이루어져 정해진 만큼 '징역 1년~3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 법관을 대상으로 한 기본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징역 1년이 2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수 의견(5인) : 징역 1년 6월~4년

- 감경 영역의 상한을 징역 2년으로 정하는 데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감경 영역과 중첩구간이 최소화되도록 기본 영역의 하한을 징역 1년 6월로 정함이 타당함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중 영리 목적 반포 등과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중 영역**

㉠ 다수 의견(7인) : 징역 2년~4년

- 감경 영역, 기본 영역과의 균형,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가중 영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년~4년'이 적절함
- 가중 영역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정하게 되면 법관을 대상으로 한 가중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중 57.5%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장차 양형실무와 괴리가 예상됨

㉔ 소수 의견(5인) : 징역 3년~7년

- 기본 영역을 '징역 1년 6월~4년'으로 설정할 경우, 기본 영역과 가중 영역의 중첩 구간이 1년 정도 겹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가중 영역은 '징역 3년~7년'으로 정함이 바람직함

(3)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배포 등	징역 6월~2년 (의견 일치)	징역 1년~3년(7인) 징역 1년6월~4년 (5인)	징역 2년~4년(7인) 징역 3년~7년(5인)

5. 소지 범죄

가.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범죄군 형량 범위⁴⁾

(1) 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5백만 원↓)

- 통신매체이용음란⁵⁾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통신매체이용음란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형법 제145조 제1항(1년↓)

-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주	~6월	4월~8월	6월~1년

(3) 형법 제260조 제1항(2년↓, 5백만 원↓)

4) 성범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성범죄 이외 범죄군까지 정리함.

5) 양형위원회 제97차 정기회의에서 심의를 마침.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1년6월

(4) 형법 제311조(1년↓, 2백만 원↓)

○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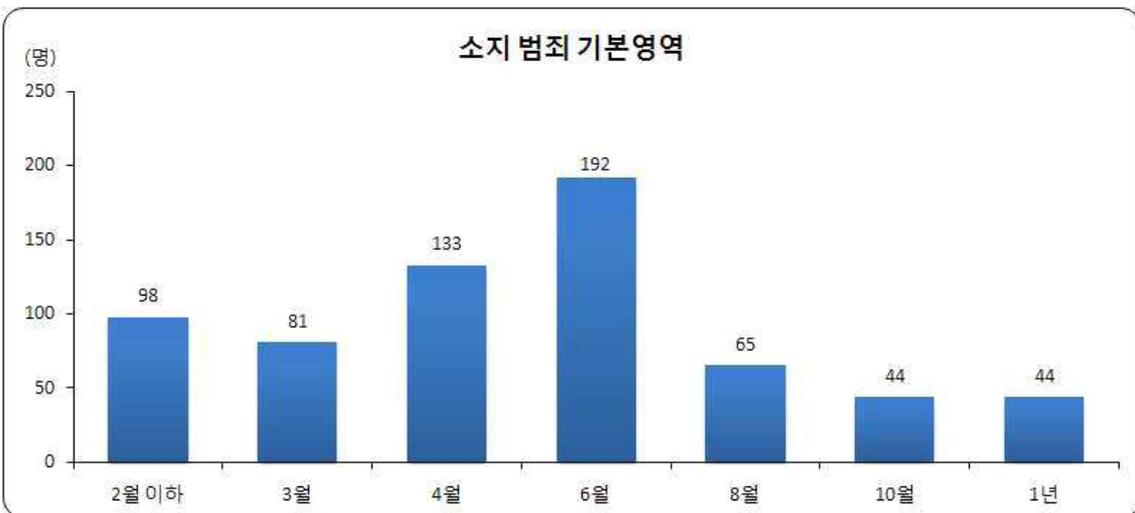
(5) 분석

감경	기본	가중
~4월 (1)	2월~8월 (1)	4월~1년 (1)
~6월 (2)	2월~10월 (1)	4월~1년6월 (1)
~8월 (1)	4월~8월 (1)	6월~1년 (1)
	4월~10월 (1)	8월~1년6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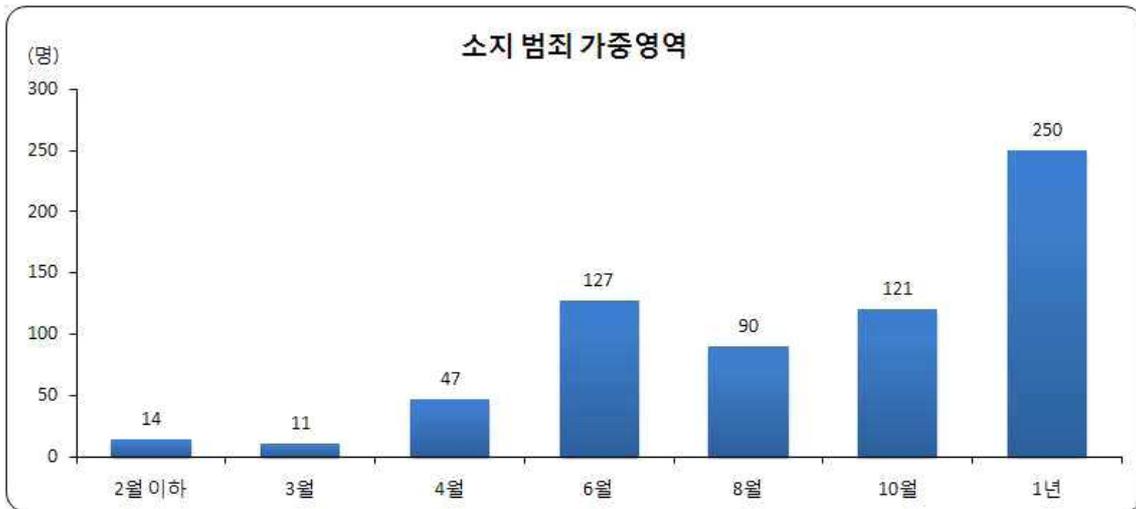
나. 선고 형량 : 사례 없음

다. 법관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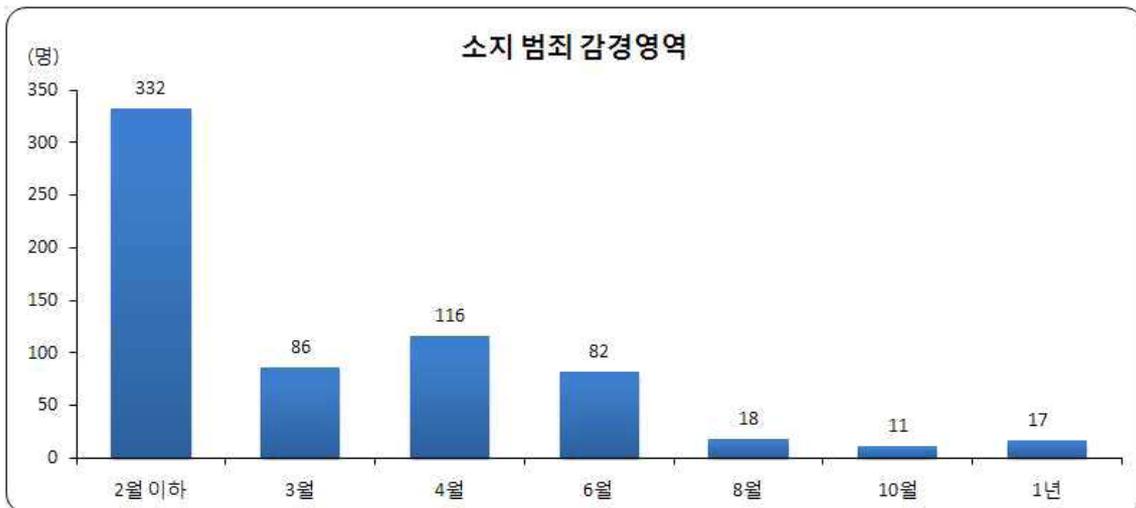
(1) 기본 영역



(2) 가중 영역



(3) 감경 영역



(4) 분석

감경 영역	인원	%	기본 영역	인원	%	가중 영역	인원	%
2월 이하	332	50.2	2월 이하	98	14.9	2월 이하	14	2.1
3월	86	13.0	3월	81	12.3	3월	11	1.7
4월	116	17.5	4월	133	20.2	4월	47	7.1
6월	82	12.4	6월	192	29.2	6월	127	19.2
8월	18	2.7	8월	65	9.9	8월	90	13.6
10월	11	1.7	10월	44	6.7	10월	121	18.3
1년	17	2.6	1년	44	6.7	1년	250	37.9
전체	662	100	전체	657	100	전체	660	100

라. 논의 결과

(1) 요약

○ 권고 형량범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 의견(7인)	징역 4월 이하	징역 2월~8월	징역 6월~1년
제2 의견(5인)	징역 6월 이하	징역 4월~10월	징역 8월~1년

○ 가중 영역일 경우 징역형 선택을 권고하는 서술식 기준을 둘 것 인지

㉞ 제1 의견(6인) : 서술식 기준을 됴에 찬성

㉟ 제2 의견(6인) : 서술식 기준을 됴에 반대

(2) 상세

(가) 권고 형량범위

○ 다음과 같은 2가지 의견이 제시됨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다수 의견(7인)	징역 4월 이하	징역 2월~8월	징역 6월~1년
소수 의견(5인)	징역 6월 이하	징역 4월~10월	징역 8월~1년

㉠ 다수 의견(7인)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과의 균형, 법관을 대상으로 한 형량범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히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본 영역으로 징역 4월 미만을 응답한 경우가 27.2%에 해당하므로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에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 소수 의견(5인)

- 외국의 처벌례와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소지 범죄이고, 비록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에 불과하더라도 각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한 상향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함

(나)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을 권고하는 서술식 기준을 둘 것인지

○ 소지 범죄에 대하여 “가중 영역에 해당할 경우 징역형 선택을 권고한다(제4유형).”는 별도의 서술식 기준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제1 의견(6인) : 찬성**

- 소지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로서 비록 권고 형량 범위는 법정형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적어도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절한 규범적 조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형종 선택에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택을 권고하는 서술식 기준은 허용됨. 양형기준은 이미 선거범죄에 대하여 특정 영역에 해당할 경우 징역형만을 선택하도록 권고함

㉡ **제2 의견(6인) : 반대**

- 양형기준은 선거범죄 외에는 징역형을 택할 때에만 적용되는데(2018 양형기준 609면 2행), 이미 형종 선택이 완료된 상태에서 '징역형 선택을 권고한다.'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은 양형기준 체제상 적합하지 않음
-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법관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형기준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질 우려가 있음
- 형종 선택이 극히 중요한 선거범죄 외에는 현재까지 전례가 없는 만큼 서술식 기준 도입에 신중할 필요 있음

(3)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소지	징역 4월 이하(7인) 징역 6월 이하(5인)	징역 2월~8월(7인) 징역 4월~10월(5인)	징역 6월~1년(7인) 징역 8월~1년(5인)

○ 가중 영역에 해당할 경우 징역형 선택을 권고한다(제4유형).

☞ 찬/반 각각 6인

V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1.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결과

가.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u>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u> • <u>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u>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u>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u> • <u>범행에 취약한 피해자</u>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u>처벌불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u>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영리목적 범죄의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영리목적 범죄의 경우)</u>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상당 금액 공탁</u>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	--

나.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1) 특별감경인자

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폭력, 공갈,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장물, 강요, 손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 있어서의 특별감경인자이고, 이 범죄군의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농아자 / 자수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③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이 범죄군의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다만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한 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고의적인 심신미약 상태 야기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성범죄 양형기준, 명예훼손 양형기준과 같은 서술식 기준을 추가 ☞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동일함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특별가중인자

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 방화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임
- 이 범죄군의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에도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기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이 범죄군의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③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이 범죄군의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밑줄 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구성요건,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해당 정의 규정 중 수정되거나 추가된 부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나체, 성관계 등)의 음란물이거나 이러한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학교·학원의 교사·학생, 직장동료 기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 학업 중단,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⑤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성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됨
-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1.5%의 응답자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에 찬성
- 양형인자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 청소년 또는 위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기관 ·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 감독 대상인 아동 · 청소년인 장애인을 또는 위 아동 · 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라고만 규정하나, 2013. 6. 19. 성범죄 양형기준이 수정, 시행된 후 2015. 12. 29.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가 개정되어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⑥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이 범죄군의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성범죄는 같은 범죄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음란물제작 등 범죄도 광의의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동종 범죄의 개념을 확장하여 성범죄 전과를 동종 누범에 포함시킴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3) 일반감경인자

① 소극 가담

- 공범 중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행위반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경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살인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공갈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이 범죄군의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4) 일반가중인자

①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성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특별가중인자인 법률상 신고·보호의무자의 범행보다 불법성, 비난가능성이 낮으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성범죄에서는 행위자인자로, 사기범죄에서는 행위인자로 각각 다르게 반영하였으나 성범죄의 예에 따라 행위자인자로 분류함
- 양형인자 정의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제(師弟)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가중인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에 '성범죄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넓힘
- 다만 그동안 양형기준에서는 '동종 집행유예 또는 실형 전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상 '동종 집행유예 또는 실형 전과'를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로 수정함이 타당함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 차단
 - 양형위원회 제98차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현을 수정하여야 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③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성범죄, 약취·유인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였고, 이 범죄군의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경우에도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1) 특별감경인자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①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할지 여부

○ 제1 의견(6인) : 찬성

-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 양형인자로 포섭할 수 있는 '유포된 음란물을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에 관하여 73%, '해당 음란물을 스스로 폐기한 경우(제작범죄)'에 관하여 64.2%의 찬성 응답이 있었고, 형 감경사유로 삼은 판결례도 발견됨
- 음란물에 대한 피해는 유포·배포로 크게 확산되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특별감경인자로 보아야 함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으로써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됨

○ 제2 의견(6인) : 반대

- 제작된 음란물을 삭제 또는 폐기하기 전에 유통한 경우나 범죄 증거 인멸을 위하여 제작된 음란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결국 유사하므로, 처벌불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삭제하기로 한 이상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서는 안 됨

②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할 경우 정의 규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작, 수입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음란물을 일시적으로 소지하다가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참고사항]⁶⁾

- ㉠ 아래와 같이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 의견 제시됨
- ㉡ '유포되기 전' 또는 '유통되기 전'이라는 한정 문구 추가
- ㉢ 표현을 '제작, 수입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로 수정
- ㉣ 감경인자로 반영할 경우 ㉠ 행위인자가 아니라 행위자/기타 인자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 ㉢ 행위자/기타 인자로 분류하더라도 양형인자 평가원칙에 예외를 두어 특별가중인자 중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보충적으로 제시됨

6) 보충 의견과 관련하여 양형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단에서 재논의 예정임.

(나)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경우

①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할지 여부

○ 제1 의견(5인)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

- 실제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제작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실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죄질이 가벼움
- 처벌불원을 통하여 감경될 여지가 없는 만큼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위헌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 제2 의견(3인)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

-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제작 과정에서 이용된 경우와 양형상 차별을 둘 필요는 인정되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특별감경인자로까지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가상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역시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 발생을 부추길 우려가 존재하므로 일반감경인자로만 반영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제3 의견(4인) : 감경인자에서 제외

-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의 적용 가능성은 없지만, 반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의 특별가중인자도 적용될 여지가 없음. 오히려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경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됨

②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할 경우 정의 규정

음란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처벌불원

①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할지 여부

○ 다수 의견(7인)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

- 건전한 성 풍속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이 성적으로 착취당하지 않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입법목적임
-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에서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처벌불원을 대부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피해확산방지 조치를 촉진할 수 있음

○ 소수 의견(5인)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

- 피해자의 동의나 존재 여부와 관계없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한 의사판단능력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음란물제작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엄격한 요건 아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안과 양형상 차등을 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②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되, 본 범죄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므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2) 특별가중인자

(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① 특별가중인자로 포함할지 여부 : 적극(의견 일치)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횡령·배임, 증거인멸·증인은닉, 사기, 증권·금융범죄, 공갈,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도주·범인은닉 등 다수의 범죄에 있어서의 특별가중인자임
-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②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 경우 정의 규정

㉠ 의견이 일치된 부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제1 의견(6인) : 예시에 포함

- 폭행·협박, 위계, 이익 제공은 '범행 수법 불량'의 대표적인 행위 태양이므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 폭행·협박, 위계, 이익 제공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어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안과 양형상 차등을 둘 수 있음

○ 제2 의견(6인) : 예시에서 제외

- 폭행·협박, 위계, 이익 제공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범행 과정에서 대체로 수반되는 전형적인 범행수법임.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게 되면, 대부분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하여 가중 영역이 기본 영역화될 수 있음

-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이 사용되면 별죄를 구성하여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가 가중됨. 그럼에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게 되면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원칙에 반함

(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v.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 의견(9인)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청소년성보호법은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인지 여부는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의 기준이 되고, 성범죄의 양형기준 역시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함. 따라서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인 경우의 양형상 차등을 두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됨
-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2018 양형기준 책자 7쪽 상단 참조)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소수 의견(3인)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모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를 두고 있고, 그 정의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로 정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범죄 전부에 대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중평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기준 연령을 13세로 고정하기보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의 해당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

(3) 일반감경인자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리목적 범죄의 경우)

○ 다수 의견(10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물론이고, 조세, 성매매, 사행성·게임물범죄, 석유사업법위반 등 대부분 영리범죄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취급하고 있음
- 이득액이 다액일 수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영리 목적 범죄에 한하여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소수 의견(2인) :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

- 영리목적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목적 달성 여부를 유·불리하게 참작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남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나) 상당 금액 공탁

○ 다수 의견(7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교통범죄 등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취급하고 있고,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중 방화치사상죄에서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
-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되,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 여부를 검토

○ 소수 의견(5인) :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

- 피해자의 동의나 존재 여부와 관계없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므로, '처벌불원'만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상당 금액 공탁'은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함이 타당
- '상당 금액 공탁'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제공할 우려가 있음

(4) 일반가중인자: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영리목적 범죄의 경우)

○ 다수 의견(10인) : 일반가중인자에서 제외

-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만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 것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체제상 바람직함
- 영리목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는데 이득액이 많다는 이유로 다시 가중을 하게 되면 이중 평가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음
- 소수 의견(2인) : 일반가중인자에 포함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면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여야 균형이 맞음

2.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 기본적으로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결과와 동일함
 - ① 주요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특별양형인자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② 일반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일반양형인자에 대한 논의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같음
- 다수 의견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아래와 같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처벌불원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리범죄의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한편,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성범죄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처벌불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의결함. 그럼에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정 필요함

VII. 향후 일정

- 일시 : 2020. 6. 1.(월)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①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②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등 3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
신 검토 ⇨ 양형위원회 의결 상황, 공청회 일정 등에 따라 안건
변경 가능성 있음